#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8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 박정훈·고동진·박정하

김위상 • 박충권 • 박준태

최수진 · 정연욱 · 김소희

정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 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 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이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 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 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 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 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①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의3제3호).
- 나.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서 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 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제9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때
- 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 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 우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중 "가맹계약 체결일"을 "제공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 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 등) ① ------시 · 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어느 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 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 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 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 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 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 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

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 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 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 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 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 이 없거나, 제9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맹본부가 신청하 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3 개 미만인 때

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 ② (생략)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의 금지)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1. • 2. (생략)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u>가맹계약 체결일</u>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u>♦</u>
5
또한 해당 가
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한 가
맹점사업자에게도 매년 예상매
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6
<u>제공일</u>

⑦ (현행과 같음)